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0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노종면・황정아・김성환

김기표 · 김윤덕 · 김교흥

정일영 · 문금주 · 윤건영

소병훈 • 박 정 • 박상혁

조승래 · 허종식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안 제1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1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도"로, "의원으로부터"를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의"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항의"를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의"를 "제1항과 제2항의"로 한다.

②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문서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을 거절한 경우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생 략)	요구)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
	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
	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
	의 위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
	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문
	서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
	을 거절한 경우에는 본회의, 위
	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	<u>③</u> 제1항 또는 제2항에
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	
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	
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④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도
중에 <u>의원으로부터</u> 서류등의	의원 <u>또</u>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 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 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있다.
-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
으로부터
<u>5</u>
<u>ਕ</u>]
<u>1항 또는 제2항 단서의</u>
<u>⑥</u>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의
는 제2항 단서의
<u> </u>
· <u>⑦ 제1항과 제2항의</u>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